

법인세 공제·감면 컨설팅 제도 안내

신청대상

-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100억 원 이상 ~ 1,000억 원 미만¹⁾의 중소기업 중소기업²⁾인 법인사업자는 누구나 신청 가능

- 1) 2023.03.01. 수입금액 기준 폐지 예정
- 2)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상의 중소기업으로 매출액이 업종별로 「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」 [별표1]에 따른 규모 기준 이내인 법인

신청범위

- 고용·설비투자 등 공제·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특정한 사안이 발생한 때에 적용 여부, 공제받을 금액 등을 문의(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따른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R&D사전심사제도 이용)

신청기한

- 세액공제·감면과 관련되는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를 개시하거나 그 의사결정을 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
- 과거 사업연도에 세액공제·감면을 적용받지 못한 부분은 경정청구를 하기 전까지

컨설팅제공

- 신청한 날이 속하는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검토내용을 서면으로 통지

제출 서류

- 법인세 공제·감면 컨설팅 신청서
- 고용이나 설비투자 등에 대한 입증자료

신청 방법

- 홈텍스*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우편,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

* 홈텍스(www.hometax.go.kr) 접근경로 : 신청/제출 > 일반 신청/제출 > 일반세 무서류 신청 > 민원명 찾기에 “컨설팅”입력 후 조회하기 > 인터넷 신청

컨설팅 혜택

- 컨설팅 내용에 대한 신고내용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제외
- 추후 컨설팅 내용과 다르게 과세처분 되더라도, 과소신고가산세 면제
- 세무상 불확실성 해소와 납세협력비용 절감